

CONTACT



변호사 이정명
T: 02.6386.0730
E: chloe.lee@leeko.com



변호사 이일신
T: 02.772.5982
E: ilshin.lee@leeko.com



변호사 차현정
T: 02.772.5971
E: hyunjeong.cha@leek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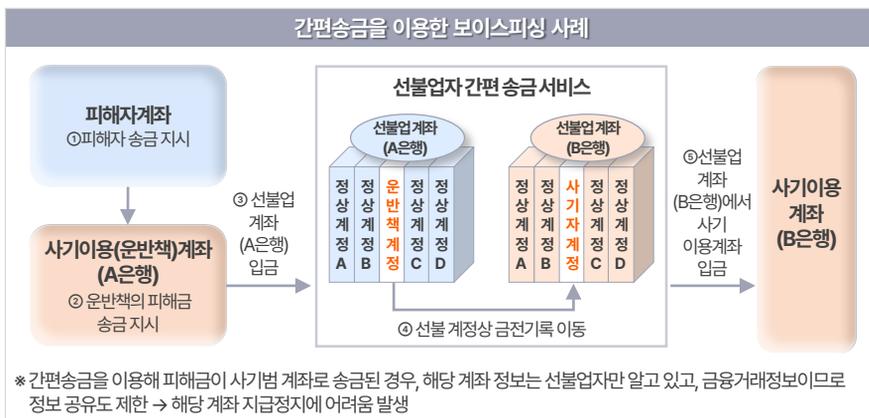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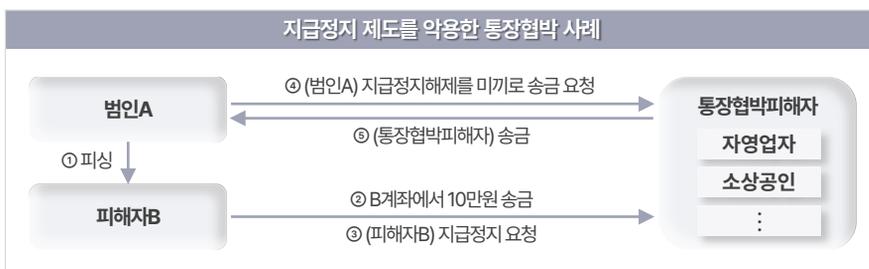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방지 등을 위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2024. 2. 27. 개정되어 2024. 8. 28.부터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을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절차 마련 (법 제15조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아래와 같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및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간편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해당 계좌 정보는 선불업자만 알고 있고, 금융거래정보이므로 정보 공유도 제한 → 해당 계좌 지급정지에 어려움 발생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면, 선불업자에게 사기이용계좌·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선불업자는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된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이를 (i) 정보의 공유를 요청한 금융회사, (ii) 피해금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및 (iii)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어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 규정 (법 제2조의6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거나, 금융거래 목적에 관한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이루어진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확인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위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요청 시, 고객에게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 마련 (법 제2조의5 관련)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의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탐지방법을 점검·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계좌에 대하여 임시조치(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정지)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4. 시사점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개정으로 간편송금 서비스를 약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로서는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상시점검을 수행하는 등 선제적인 감시 의무를 새로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규제를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